

제410회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국회사무처

일시 2023년9월20일(수)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15)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91)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3)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28)
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68)
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7)
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5)
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3)
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7)
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5)
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0)
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03)
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68)
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82)
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36)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56)
17.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9)
1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8)
1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22)
2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97)
2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11)
2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7)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30)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1)
25.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56)
2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40)

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06)
28.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03)
29.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1)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63)
31.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1)
3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11)
33.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3)
3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69)
3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42)
36.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22)
37.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89)
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90)
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9)
4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5)

상정된 안건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15) 4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91) 4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3) 4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28) 4
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68) 4
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7) 4
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5) 4
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3) 4
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7) 4
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5) 4
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0) 4
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03) 4
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68) 4
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82) 4
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36) 4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56) 4
17.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9) 4
1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8) 4

1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22)	4
2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97)	4
2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11)	4
2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중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7)	4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30)	4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1)	4
25.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56)	4
2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40)	4
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06)	4
28.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03)	4
29.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1)	4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63)	4
31.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1)	4
3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11)	4
33.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3)	4
3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69)	5
3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42)	5
36.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22)	5
37.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89)	5
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90)	5
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9)	5
4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5)	5

(15시05분 개의)

○소위원장 조승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전 중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0건의 안전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를 위해서 박윤규 과기정통부2차 관남 지금 밖에 대기하고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님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배석한 정부 관계 직원들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사실 우리 법안소위가 오래간만에 열리다 보니까 법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21대 국회 때 논의 한 번도 못 하고 자동 폐기되는 법안이 있을 게 좀 걱정되기도 해요.

그래서 최대한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수석전문위원도 보고를 압축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정부 측 의견도 최대한 간단하고 핵심적인 사항만 말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실 때도

가능하면 간결하게 토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의사진행발언요?

○박성중 위원 예.

○소위원장 조승래 예, 하세요.

○박성중 위원 쟁점 없는 법안부터 해 가지고 빨리빨리 통과시키고, 쟁점 있는 법안을 나중에 하는 게 나아 보이는데요.

○소위원장 조승래 어쨌든 지금 순서가 돼 있으니, 이걸 또 순서를 엮어뜨리면 그러니까 하여튼 순서대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그러면 돼요.

자, 혹시 언론인들 계시면…… 제가 보기에 게셔도 될 것 같은데 공개·비공개 가리지 않고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15)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91)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3)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28)
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68)
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7)
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5)
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3)
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7)
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5)
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0)
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03)

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68)
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82)
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36)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56)
17.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9)
1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8)
1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22)
2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97)
2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11)
2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7)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30)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1)
25.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56)
2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40)
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06)
28.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03)
29.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1)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63)
31.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1)
3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11)
33.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1123)

3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0769)

3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42)

36.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22)

37.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89)

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90)

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9)

4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5)

(15시08분)

○소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0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필모 의원님 안 등 4건은 가짜뉴스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신설, 의무 이행 확보수단 규정 등의 내용입니다.

21년 9월 27일 법안소위에서 운영찬 위원님이 허위조작정보의 폐해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삭제 의무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이트키퍼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사전 검열의 소지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을 하였고, 박성중 위원님은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의무 부과 등에 대한 이견이 있으며 해외 입법례도 드물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가짜뉴스 및 허위조작정보에 의한 피해 구제 및 권리 보호라는 개정안들의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다만 5쪽을 보시면 가짜뉴스 및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를 신설하고 있는데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구성요건에 대한 자의적 해석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방통위는 풍자나 패러디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본질적인 내용이나 사실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 단계에서는 허위사실 입증 가능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여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11쪽을 보시면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방통위는 가짜뉴스의 경우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현행 규정과 병렬적으로 두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정보통신망에 게재되는 정보의 사실 여부를 법원의 판결 전까지는 명백히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명백한 판단 기준이 없을 경우 허위조작정보 삭제 의무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이용자의 신고나 정보 게재자의 소명절차 없이 사업자에게 자의적 삭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22쪽을 보시면 현행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대신하여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김종민 의원안에 대해 방통위는 타 분쟁조정위원회는 대부분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방통위 산하에 조정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반면, 방심위는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원장이 위원장 및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경우 헌법상 검열금지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므로 방심위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인입니다.

온라인상의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법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그에 대한 개념 정의가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잘못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도 있습니다.

판단 기준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또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경우 그 사업자의 자의성이 과도할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모 위원님.

○정필모 위원 우선 6페이지에 제가 낸 법안 문구 중에 ‘수용자가 허구임을 오인하도록’ 이것은 허구가 아니고 ‘사실임을 오인하도록’ 이렇게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개념 정의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규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와 함께 또 개념이나 어떤 기준에 대한 모호성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논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열고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

○박성중 위원 어제 저희 당에서도 이 관련해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네 분 위원님의 법률안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안을 또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류해서 저희 안과 병합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한번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취지는 저희들도 크게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언제까지 하시는데요?

○박성중 위원 다음 주까지……

○소위원장 조승래 다음 주요?

○박성중 위원 가능한 하여튼 9월 이내로 다 끝낼 겁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9월 이내로?

알겠습니다.

윤영찬 위원님.

○윤영찬 위원 벌써 이 법들이 발의된 게 2020년 7월 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저는 정필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공청회라도 한번 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뭐냐라는 부분들에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한번 논의를 거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공청회를 한번 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위원 내용에 보면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문체부의 의견도 있고 한데, 오늘 이상인 부위원장님 오신 거지요? 인터넷언론은 방통위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고민정 위원 아니, 방통위에 대해서 논의할 앞으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는 것을 묻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인터넷언론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아니, 개인 인터넷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민정 위원 인터넷신문사업자들, 여기 있지 않습니까? 문체부의 의견에 보면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발행,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필요’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즉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은 문체부에서 관리를 주로 했던 것이고……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방통위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냐는 것을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맞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예.

○**고민정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방통위에서 발표한 것 보니까 인터넷언론도 심의 대상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인터넷언론 자체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주로, 그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현 실정은.

○**고민정 위원** 그런데 그걸 왜 방통위에서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방통위에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폐해가 발생하면 그 부분도 저희 방통위가 들여다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고민정 위원** 어쨌든 인터넷언론은 방통위의 직접적 심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정 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가 법안 검토를 할 때 문체부의 의견은 이렇고 방통위의 의견은 이러니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가닥이 타지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인터넷신문, 인터넷언론에 대한 보도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중재위원회에서 많이 다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와는 독립기구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면 거기서도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고민정 위원** 방심위는 방통위와는 별개로 독립된 기관이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런데 방통위가 자꾸 뭘 방심위를 통해서 하겠다는 말이 굉장하……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아니, 저희가 했다는 게 아니라……

○**고민정 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아니요, 방심위가 그걸 다룰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지요, 저희가.

○**고민정 위원** 계속 말이 명확하지가 않으세요. 이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 어떤 분야는 방통위에서 보는 건지, 어떤 분야는 문체부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건지, 그래야 법안의 정리가 되지 않

겠습니까?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는 인터넷언론은 방통위의 심의 대상이라고 얘기하신 게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법률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서 문체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있으셔서 이걸 좀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지 그다음 법안에 대한 심의를 저희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확실히 하려고 여쭙 건데 답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대상도 될 수 있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물론 저희가 직접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게 무슨 말씀이예요?

○**고민정 위원** 심의 대상이 될 수 없지요.

○**박성중 위원** 이상인 위원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약간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방통위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동안 계속 논쟁을 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신문사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누가 관장할 것이냐, 문체부에서는 자기가 관장해야 된다 그리고 상당수 인터넷신문은 그쪽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에서는 통신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인터넷사업자는 통신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관장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이런 상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필모 위원님.

○**정필모 위원** 이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소위 지자체에 등록하는 인터넷언론의 보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방송과 통신 중에서 소위 얘기해서 언론기관으로 등록된 통신매체가 아니고요, 그거는 일반적인 통신의 어떤 유해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현행 규정에 구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방심위는 주로 방송과 인터넷상에서의 유해정보 같은 경우를 심의해서 차단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게 돼 있는 거고, 등록된 인터넷언론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위를 통해서 인터넷언론을 어찌 어찌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현행법상 위법적인

거예요.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방통위에서 인터넷언론을 방심위에 어떻게 해서 이걸 규제하겠다 하는 건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터넷언론에 대해서는 당연히 쪽 여태까지 문체부를 거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그 부분을 담당해 온 건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부분이 방심위가 설치법상의 통신 심의 권한도 폭넓게 갖고 있어서 방심위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에 통합 심의도 가능할 것이라는 해석론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 방통위가 나서서 방심위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는,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윤영찬 위원 똑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더라도 인터넷언론사의 뉴스는 문체부에 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법으로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루트가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언론중재법의 규정을 받게 돼 있어요.

뭔가 지금 굉장히 착각을 하시는데, 인터넷에 떠도는 허위·유해 정보 이것은 방심위가 심의할 수 있지요. 그런데 무슨 언론사의 기사 내용을 가지고 마치 방심위가 심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걸 남의 기관이 할 수 있다 없음을 왜 방통위가 얘기를 합니까? 방통위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없어요, 방심위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에 되게 이상한 게 방심위의 얘기를 방통위가 자꾸 하고 있어요. 방통위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방심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한, 그러니까 인터넷상의 허위정보에 대한, 인터넷상의 허위·유해 정보에 대한 심의는 방심위가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론사 뉴스에 대해서 방심위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언론사의 뉴스를 방심위가 심의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구분을 명확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방통위의 위원이신 이상인 위원께서 방심위가 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까지 답변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제가 방심위

를 대신해서 답변하는 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적으로 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언론중재위원회의 기간이라든가 심리 기간, 하는 것 보면 굉장히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고 나중에 그 결정 자체가 나왔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또 사회적인 논의가 다 사라지고 난 뒤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 방통위가 방심위가 어떻게 해라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자, 부위원장님 됐고요.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오늘 결론 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논의를 하되, 지금 아직도 정리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을 가짜뉴스라고 표현하든 허위조작정보라고 표현하든 그 개념이 뭐냐, 방통위가 자꾸 최근에 가짜뉴스 근절하겠다, 가짜뉴스 근절하겠다…… 도대체 거기서 얘기하는 가짜뉴스가 뭐냐, 방통위가 갖고 있는 가짜뉴스의 정의를 나는 제시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그러면 가짜뉴스는 언제 이것이 가짜뉴스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거냐,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규제 행정청의 행정적 판단으로도 가능한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법안이 윤영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6월 달에 내놓고 2년 전에 한 번 짧게 논의되고 2년 만에 다시 논의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가짜뉴스에 대해서 위낙에 지금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니까…… 그런 튼튼한 개념적인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논의가 진전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방통위는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언급을 하시지만 그런 개념 정리나 이런 기본적인 프레임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으신 것 같아요.

○고민정 위원 저 그래도 하나만……

○소위원장 조승래 예.

○고민정 위원 앞으로…… 지금 방통위의 위원이 두 분이시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예.

○고민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십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그런데 저는 이걸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언론은 방통위의 심의 대상도 아니고 방심위의 심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건 인정하고 가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방심위의 심의 대상 중에…… 그건 저희의 그냥 해석론이지 저희가 방심위에 대한 걸 대신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정 위원** 그러니까 방통위의 심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예? 방통위의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고민정 위원** 인터넷언론이 심의 대상이 아니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방통위는 거기에 대해서 직접 심의할 권한은 없습니다, 방통위는.

○**고민정 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직접 심의 권한은 방통위는 아예 없어요. 방송이고 뭐고 간에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가짜뉴스 TF를 만들어서 가짜뉴스가 아닌지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건 법적 근거 없는 상태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판단 여부를 만약에 방통위가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정말로 위법적인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점들을 지적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방통위가 하고자 하는 것들도 튼튼한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논의하시고 국민의힘에서 법안을 준비해서 곧 내신다니까 그것하고 해서, 공청회 같은 걸 한번 합시다. 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1항부터 제4항까지는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먼저 소위 자료 중 이정문 의원안은 오늘 상정되지 않았으나 소위 회부 예정이므로 소위 자료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소위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은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

공제도 관련 내용으로 지난 2월 14일 법안소위에서 도매제공 협정 체결 기간의 단축 등에 대해 합의한 사항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7쪽까지 걸쳐 정리해 놓았습니다.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4쪽을 보시면, 운영찬의원님은 안 제38조의2 제3항 중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사전규제 부분을 삭제하자는 의견이신 반면, 과기부는 현행 사전규제를 부칙을 통해 3년간 유지 후 사후규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5쪽을 보시면 안 제4항제1호에 윤 의원님은 사후규제 채택 시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에 있어 대가 산정 원칙을 정하고 있던 현행법 제38조제4항 후단 내용도 함께 삭제하자는 의견이신 반면 과기부는 사후규제 채택 시 대가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회피가능비용 고려 등 대가 산정 원칙을 규정하자는 입장이어서 윤 의원님과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을 보시면 부칙으로 운영찬 의원님 안에 따르면 도매제공의무제도 자체의 존속을 2025년 9월 22일까지로 하는 반면, 과기부 안은 도매제공의무제도 자체의 존속은 영구화하면서 시행 후 3년 동안은 사전규제 유지, 이후 사전규제 실효 및 사후규제 조항 효력의 영구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과기정통부입니다.

알뜰폰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난 번 소위에서 논의해 주신 의견을 중심으로 했을 때 과기정통부는 일몰제는 폐지하고 제도 자체를 영구화하고 대신에 사전규제는 준비 기간이 현재 필요한 관계로 3년 내외 또는 위원님들께서 상의해 주시는 기간 정도는 준비 기간으로서 운영을 하다가 바로 사후규제로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사후규제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간의 협정이란지 이런 부분이 공평한지, 또 불공정한 부분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들을 좀 갖고 있는 것이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찬 위원님.

○**윤영찬 위원** 일몰이 이루어진 지가 지금 얼마나 지났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윤영찬 위원** 1년 됐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윤영찬 위원** 1년 돼서 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현재까지는 그동안에 있었던 기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합병 인가하면서 그 조건으로 이 부분, 현재 운영되는 제도들을 조건으로 해서 이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윤영찬 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이 지난 지금 까지도 시장 자체가 뭐 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알뜰폰사업자들 이익 규모가 벌써 1000억을 넘었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으로, 과기부가 개입하지 않고도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알뜰폰사업자들도 수익을 누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과기부가 도매 대가라든지 도매 제공이라든지 대가 규제라든지 이런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의 상황에서 이런 규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경쟁 상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여지를 더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후규제라는 이 대가 규제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과기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다 만들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사전규제를 주장하신다면 사실은 법을 새롭게 개정해야 될 이유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도 충분히 시장이 잘 굴러가고 있는데 왜 굳이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몰 상태로 가는 게 낫지.

거기에 대해서 차관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여러 가지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 있고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도 저희들 유념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현재의 시장 상황은 제도가 다시 재개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망 아래서 움직여 나가고 있는 측면이 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

과, 그동안 이 제도를 10여 년 정도 운영하면서 나온 결과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현재 알뜰폰사업자들이 5년간 한 1000억 정도의 이득을 보고 있는 것들이 외형상 좀 커 보이기는 합니다만 사업자의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알뜰폰사업이 현재 고착화되고 있는 이통시장에 하나의 활력을 가져 오려면 제도가 조금 더 굳건하게 마련이 되고 여건이 되는 경우에, 저희들은 3년을 주장합니다만 2년 정도라도 준비 기간을 좀 주시면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 방식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찬 위원** 잠깐만, 추가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차관님 오셔서 안을 가져오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아무 소식이 없으셨어요. 저는 기다렸는데…… 우리 그때 마지막으로 미팅하신 것 기억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그래서 그때……

○**윤영찬 위원** 그것 정리해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가져오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소식이 없어서 과기부는 의지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하여튼 그때 말씀 나눈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즉 작업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들어 보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때 위원님하고 말씀 나눈 것에서 변동은 없습니다.

○**윤영찬 위원** 하여튼 저는 지금 상황으로도 충분히 잘 경쟁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또 자율적으로 알뜰폰사업자들과 기간통신사업자들 간의 자율규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필모 위원님.

○**정필모 위원** 차관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와 관련해서 일몰 이후의 시장 상황을 평가해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걸 논의하고자 한 것 기억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정필모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일몰 이후에 한 1년 됐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정필모 위원** 그러면 한번 시장 상황을 면밀하

게 평가를 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국회에 제출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 법안에 대한 토론 자료로 활용해서 결론을 내게끔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 법안도 폐지, 연장부터 해 가지고 또 사전·사후 규제에 대해서도 다 각각의 법안들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일몰 이후의 1년간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해야만 좀 객관성 있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평가해서 작성해서 가지고요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 법안 논의할 때 참고해 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안 오늘 결론 내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보류를 해서 그런 평가를 받아 보고 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예, 알겠습니다.

허은아 위원님.

○허은아 위원 저도 보류 의견입니다.

이게 좋은 의도에서 시작은 했을 텐데 우선은 두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자료를 충분히 받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이게 판매업체가 60개이고 나머지 21개가 IoT 서비스만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 만만 이용한다는 게 무엇인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알뜰폰 시장에 대한 부분을 정필모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줘야 문제가 없이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예, 알겠습니다.

보류를 하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이렇게 논의하다가 보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과기부도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일정 기한을 좀 정해 주고 그 뒤에 사후규제로 전환하겠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아마도 우리가 10월 달에는 국정감사 해야 되고 예산심사 하고 아마 11월 달쯤에 법안심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11월 달까지 과기부가 그 안을 만들어서 우리를 설득 못 하면

윤영찬 의원안대로 그냥, 지금같이 그냥 가는 걸로…… 가면 다 폐기시켜 버릴 테니까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좀 적극적으로 안을 만들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저희 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해지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는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15항까지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먼저 소위 자료 중 양정숙 의원안은 오늘 상정되지 않았으나 소위 회부 예정으로 소위 자료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소위 자료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부가통신사업 이용약관 신고 또는 인가제 도입 관련 내용으로 고민정 의원님 안 제28조제4항제3호는 통신장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기간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반례 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나 다만 신고된 이용약관이 반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필요 시 손해배상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7쪽을 보시면 16쪽까지에 걸쳐 부가통신사업 이용약관 인가제 도입을 규정하는 한준호 의원안에 대해서는 기간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제를 폐지한 20년 6월 9일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취지와 함께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비해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데 이용약관에 대해서만 기간통신사업자보다 강한 규제를 부여하는 것은 법률 체계상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을 보시면 19쪽까지 부가통신사업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박성중 의원님, 고민정 의원님 안의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신고할 의무와 함께 이용조건에 따라 차별대우나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등의 경우 과기부장관이 신고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기간통신역무와 동일하게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의 의견이 있는 점, 과기부가 국내 서비스를 제공 중인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요금 등이 포함된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할 경우 한미 FTA 등의 부가서비스 공급 조건상 원칙적 금지사항에 해당되는 것 등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인 점, 정필모 위원님께서 한미 FTA에서도 경쟁 촉진 또는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요금표 제출을 허용한다는 점을 지적하셨다는 점 등을 고려해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20쪽을 보시면 25쪽까지 부가통신사업 이용약관 신고제 도입 관련 위반 시 제재 내용으로 박성중 의원님, 고민정 의원님 안은 신고제 도입을 전제로 금지행위 추가, 시정명령, 징역 또는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신고제 도입과 연계하여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고민정 위원님께서 기간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과 관련되어서는 과기정통부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부가통신사업의 이용약관 인가나 신고제 도입 관련되어서 여러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규모가 큰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 일정 정도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현재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태고 또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를 기조로 하고 있는 현 국정기조도 좀 고려를 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FTA 같은 경우에 요금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업 신고 말고 별도의 이용약관 신고를 받도록 하는 부분과 그

에 따른 후속조치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위원 먼저 첫 번째, 이게 주무부처가 방통위이기 때문에 ‘과기부장관은 방통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수정의견을 주셨는데 동의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 없이 ‘들어야 한다’로 바뀌야 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방통위에서 그 기준은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들어야 한다’로 수정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 부가통신사업자들 이용약관 신고제도 도입 관련해서 이것은 해외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부가통신사업자가 우리나라도 있지만 해외사업자들도 많은데 거기는 규제할 수 없고 우리 기업들만 규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또다시 역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러면 애초에 이 법안을 냈던 것은 부가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보호하는 방안으로 이러한 조항들을 넣자라는 의도였는데 그게 해외사업자들과 국내사업자의 역차별 문제가 생기는 거라면 연구용역을 수행해서 내용을 좀 보고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먼저 본 다음에 다음 또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다른 위원님들.

어쨌든 지금 이용약관 신고제도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업계도 그렇고 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리고 나머지, 아까 앞 부분에 수정의견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것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고민정 위원님 말씀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한준호 의원님, 박성중 의원님, 고민정 의원님, 양정숙 의원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신고제 신설 부분은 박

성중 간사님과 양정숙 의원님 이 내용에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두 개는 남겨 두고 나머지 한준호 의원과 고민정 의원 것을 병합해서 처리를……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고민정 의원님 안만 나중에 대안으로 포함시켜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한준호 의원도 빼고?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예, 그것은 계류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고민정 의원안을 수정하는 건데?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뒤에 또 이 법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대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어쨌든 이용약관 인가제 혹은 신고제, 이용약관과 관련된 제도 변경을 담고 있는 안은 보류해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고민정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고민정 의원안은 우선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예.

○소위원장 조승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3~15항까지는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필모 의원님 안은 정보통신서비스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간편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간편인증 관련 비용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간편인증의 대상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예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 제47조의7제1항제1호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규정하는 등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ISMS를 통해서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자고 하는 취지에 공감하고 또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 대해서 간편인증제 도입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중소기업법에 따른 소기

업을 명시하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다른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면……

먼저 정필모 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정필모 위원 예, 저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이따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별정우체국법 박찬대 의원님 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균특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를 공감할 수 있으나 과기부는 현재 국가가 모든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있고 전체 701개 별정우체국 중 인구감소지역 소재 국이 416개로 다수이며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에 대한 준용규정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별정우체국이 하고 있는 기능을 고려했을 때 국가의 행정적인 또는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우정사업 특례법에 따라서 이미 별정우체국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별정우체국이 전체 700개 중에 416개가 돼서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별정우체국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시면, 현재 우정사업 특례법에 따른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박찬대 위원님.

○박찬대 위원 지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별정우체국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차관님도 충분히 이해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인구

감소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니까 한 60% 정도 가까이 되니까 대부분의 별정우체국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특례법 등에 지원 규정이 있고 모든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별정우체국의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되지 않겠나 정도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박찬대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강조한다 그러면 지금 인구감소지역의 지방행정 공백이 상당히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 보완하는 공적 역할을 인구감소지역의 별정우체국이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간단한 예를 들면 코로나 때 농어촌지역에 보건용 마스크 또는 재난지역의 긴급생계지원 접수 창구, 지역 독거노인에 대한 돌보미 활동, 산불 감시 또 라돈 침대 사태에서 수거 협조 이런 것들도 있고 인구소멸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지역 특산물 개발, 판로 지원 등에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별정우체국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는 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물론 60%에 가까운 별정우체국이 인구소멸지역에 있기는 하지만 결국 각 지역별로 필요한 지방행정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데 그것을 정부의 재정 지원에만 국한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지방정부와, 지방행정과도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좀 더 집중해서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자체 연계사업의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그때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뭐라고 언급이 되어 있느냐 하면…… 어느 정도까지 명시적이어야 되는지의 논란이 항상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해당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이나 보조가 가능하다는 정도의 규정은 있어야 된다고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별정우체국법이나 특례법에 의해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두는 정도보다는 별도로 지금 제가 개정안에 내놔던 것 같은 재정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전북 고창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지원 검토사업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공공전기차 충전소 설치라든가 또는 지역장애인에 대한 고용과 같은 사업을 진행할 때 이렇게 별정우체국법에 별도의 지방재정을 넣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게 되면 훨씬 더 다양하고 맞춤형 지방재정과의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지원보다는 이런 부분을 언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필요한 경우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재정적 지원이 대부분 대가 관계라든가 수수료 관계처럼 일대일로 그때그때 매치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정 운용의 융통성이라든가 또 사전의 예산 관계 문제라든가 고정되어 있을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별정우체국에 별도로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지방재정법하고의 연계라든가 효율성도 상당히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사전에 위원님 취지를 생각하지 못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기정통부 입장에서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특례법에 따라서 이미 다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하에, 다만 지금 말씀 주신 것은 특정한 사업과 관련되어서 지자체와의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 주셨는데 그것은 해당되는 기관하고 한번 저희가 상의해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들 지금 입장에서 지자체의 사업과 관련되어서 별정우체국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재정적 지원을 담보하고 있는 법에 들어가야 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이 가능하도록 인정은 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다른 법률에 있는지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일반적인 지원시책 마련 의무 규정을 두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당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또는 보조가 가능하다는 정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이 법안대로 별도의 개정안을 내 주신다라고 하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서 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이 내용들을 부합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요.

또 별정우체국,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별정우체국이 정부의 어떤 재정 지원과 경비 외에도 우리 지방행정과 연계해서 보다 복합적으로 행정 지원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가외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별정우체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율하고 있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별정우체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환경의 변화에 상당히 운영의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입법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갈등이라든가 애로도 상당한 부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알겠습니다.

정필모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정필모 위원 사실은 지정승계제도와 관련해서 제가 이걸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인데…… 현재 별정우체국제도가 생긴 지 한 60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 생길 때는 교통·통신이 굉장히 불편했던 시절이고 해서 많이 생겼는데 그 이후에 교통·통신이 상당히 편해지고 또 최근에는 우편업무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통신수단을 활용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정필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연간 별정우체국에 국고에서 지원되는 게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 2300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정승계제도도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정승계제도를 악용해 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우체국장 자리를 일종의 어떤 매매수단으로 활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례들이 몇 차례 적발된 적 있고 그래서 별정우체국

의 경영과 관련된, 국고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문제가 드러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단계적 폐지 법안을 내놓았던 건데……

실사 그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추가적인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더라도 저는 사후적인 관리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철저히 되지 않으면 이 지정승계제도나 정부의 국고 지원이 악용될 수 있듯이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도 정부 측에서 검토를 하셔서 가지고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알겠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박성중 위원 3페이지를 한번 봐 보세요.

전반적인 취지는 정필모 위원하고 저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별정우체국이 전화라든지 우편이라든지 이런 데 치중하다가 또 요사이 최근에는 배송 관련 이런 데에 거의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승계제도의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 기능은 많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이 제기되는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뭔가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꼭 이렇게 별정우체국법을 개정해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좀 다를 수 있다. 3페이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23조를 보면 ‘과기부장관은 국가 정책적으로 또는 공공목적 위해서 우체국을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그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해서 여기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 경우에 지방재정법에 의한, 또 우정사업 운영 특례법에 의한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기존 법으로도 운영 가능한 것 아니냐, 꼭 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모든 법을 개정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하나하나를 다 개정하게 되면. 근거가 있다면 그걸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어쨌든 박찬대 의원님은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별정우체국 혹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취약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하는 지자체나 아니면 그것을 수탁받는 별정우체국이나 근거가 모호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 법을 내신 거니까,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법적 근거가 이미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건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조금 하셔서……

아까 차관님은 검토할 때 박찬대 의원의, 발의자의 취지가 그런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다고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박찬대 의원실하고 상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까 기본적으로는 우정사업 특별법 말씀을 드렸고, 박찬대 위원님 말씀은 우체국의 기본적인 기능 이외에 라돈 침대의 수거라든지 마스크의 보급이라든지 인구가 없는 데 행정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유일하게 별정우체국이 있는 경우에 부가적으로 어떤 행정 목적을 하는 그 부분을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업무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 부분은 행안부나 지자체하고 한번 의견을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잠깐, 정필모 위원님께서 박성중 위원님하고 의견이 똑같은 건 아니시잖아요?

○정필모 위원 예.

○박찬대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규정을 두더라도 그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하라는 얘기지 이 규정 자체를 반대하는 얘기는 아니시고, 박성중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23조 비용부담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것으로 준용할 수 있는데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냐라고 하기 때문에 두 위원님의 의견이 동일한 건 아니라고 보이고요. 제 의견과 박성중 위원의 의견만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께서 잘 살피서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 의원실하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중 위원 제가 똑같은 것은 앞에 취지가 같고 뒤에 법률안은 다른……

○소위원장 조승래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인구감소지역, 낙후지역에 대한 것들을 특별히 한 것이니까 그건 약간 정책 대상이 좀 다르기는 해요. 그런 점들을 한번 같이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중 위원 참고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별정우체국 관련해서 저도 충분히 관련자들로 부터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정공무원들 또 교육공무원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인원이 많은 편이거든요. 실제 그분들도 많이 줄여 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도 못 줄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크게 보고, 또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야 되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줄여 줘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없애 줘야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도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방송법 홍석준 의원님 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 현행법에서 변경허가 등을 얻도록 규정한 것을 신고하면 되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안 제15조제4항을 신설하여 이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하게 하고, 안 제108조제1항제2호를 신설하여 신고 미이행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개정 취지와 또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하신 수정의견에 과기정통부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이 수정에 대해서 발의하신 홍석준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준 위원 차관님, 그러면 수정의견에 신고 수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러면 지금 수석이 제안하

신 3000만 원 이것은 뭐 근거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현재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미신고의 경우에도, 그래서 그것은 맞추는 성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홍석준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위원 그냥 질문인데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계열회사 법인을 합병할 때의 문제인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계열회사가 뭐가 더 많이 있길래 이걸 합병해야 돼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뭐 리스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선방송사업자는 어디가 있는데 그중에 계열회사들은 이만큼이 있다, 그래서 이것에 합병을 하려는데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그러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그냥 언뜻 떠오르는 건 별로 없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관 김정렬 방송진흥정책관입니다.

참고로 어떤 리스트가 있어서 이랬다기보다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SK브로드밴드가 브로드밴드노원방송을 합병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어디를 합병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관 김정렬 브로드밴드노원방송, 서로 별도 법인이었습니다, 계열사.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계속 변경허가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기본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그냥 한 것도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비슷하게 계열사 간의 합병인 경우에는 간이심사라고 해 가지고 단순히 사실 부분만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하고 비슷한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유선방송사업자들 계열회사가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는 좀 정리해서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관 김정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같은 제명의 법안이 있으니까 의결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홍석준 의원님 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 현행법에서 변경허가를 얻도록 한 것을 신고하면 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앞 법안과 마찬가지로 이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하게 안 11조 4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안 28조 1항 1호를 신설하여 신고 미이행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조금 전에 논의하신 방송법과 같은 취지의 개정안이고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위원님들.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앞의 법하고 유사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어디고 계열회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같이 알려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관 김정렬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내일이 전체회의니까 그것 자료 전체회의 하기 전에 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관 김정렬 예, 빨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렇게 해서 고민정 위원님 비롯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관 김정렬 알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이것은 왜 과태료가 1000만 원이 예요, 앞것은 3000만 원이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그게 두 개 법이 서로 달라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관 김정렬 이것도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좀 맞춰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것 소위 과태료 기준, 규정도 법률들끼리 문제가 좀 있기는 있네요. 그러니까 과기부가 일괄 점검을 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과태료 기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알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제명이 있으니까 이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영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윤영찬 의원님 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IPTV 서비스에 송출하기 위한 자체 제작 프로그램에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의 시청권을 보장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방송법 89조 제8항은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체계를 같이하여 실효성을 갖도록 개정안의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하여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IPTV 제공사업자는 직접 사용 채널을 운용할 수 없어 실제로 자체 제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개정의 실익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장애인들의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을 하는데, 지난번에 OTT 관련되는 것을 똑같은 것을 통과시킨 것을 저희들이 한번 심의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윤영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아마 한 것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방송법에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느

기준에 맞추는 게 합리적일지 그 부분은 논의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수정의견에도 저희들은 동의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지난번 OTT 관련되는 콘텐츠 접근권 보장할 때는 정부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취지에는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허은아 위원님.

○허은아 위원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 현실성이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IPTV 제공사업자가 직접 사용 채널을 운용하거나 콘텐츠를 만들어 내거나 그러나요?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은아 위원 그렇지 않지 않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허은아 위원 100%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안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그 부분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주신 것에 정부도, 그런 실효성을 가지려면 그 부분도 같이 개정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겠다는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송사업자들 여건상 직접 사용 채널을 IPTV에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들은 조금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윤영찬 위원님.

○윤영찬 위원 어쨌든 수어라든지 폐쇄자막이라든지 이런 지원 자체는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그것은 맞습니다.

○윤영찬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 근거들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수정의견이 지금…… 지난번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은 어찌 됐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방송법은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수정의견이랑 같은데 지난번……

○윤영찬 위원 그런데 여기는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지난번 저희들이 OTT 관련해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때는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대로 되어 있어서 어느 쪽으로 맞추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영찬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좀 더 논의를 해서 양쪽에 어찌 됐든 같은 내용의 부분들이 달리 표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조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소위원장 조승래 정필모 위원님.

○정필모 위원 지금 IPTV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체 채널 PP같이 이렇게 운용을 안 해도 가이드 채널을 운용하거든요. 가이드 방식의 어떤 채널, 그것을 채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일정 채널 번호가 있으니까 IPTV 자체에서 가이드 채널 운용하시는 것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개네들 막 프로그램 VOD라든지 이런 것 안내를 하는 하나의 채널이 있어요, IPTV.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장애인들 입장에서 이런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는 수어라든지 화면해설이라든지 자막방송을 안 하면 거기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볼 수가 없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 이게 법을 개정해서 자체 채널을, 정식 자체 PP를 운용할 수 있으면 더욱 필요해지는 거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저희들 지금도 정부의 입장은 윤영찬 의원님 발의해 주신 대로 IPTV에도 장애인 등에 대한 콘텐츠 접근성 확보를 위한 근거 조항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그런 작업들을 더 하면 좋겠다 하는 거고, 말씀 주신 가이드 채널이 이게 자체 제작 프로그램에 해당되는지는 조금 저희들이 살펴봐야…… 이게 프로그램은 아니어서 그게 조금……

○정필모 위원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전체적인 취지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동의합니다.

○정필모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특정 방송에 나간 것을 내려받기하든지 이런 것을 거기서 다 가이드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장애인 편의 방송을 안 하면 장애인들은 거기서 안내하는 정보를 입수할 수가 없지요. 요즘은 더군다나 본방 사수보다 소위 내려받기해서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장애인들도 저는 그런 수요가 꽤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집에 계신 분들도 많고 하나까. 그런 면에서는 이런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는 방송이 가이드 채널에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지요.

○소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이것 지금 현재 조정된 것에 대해서 OTT와 마지막……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노력한다’ 이것으로 할 것이냐, ‘지원할 수 있다’로 할 것이냐의 차이 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소위원장 조승래 그 차이인데 그것 뭐 시간을 끔니까? 그냥 빨리 정리를 해 버리지.

○허은아 위원 그런데 잘못하면 IPTV사가 힘들어질 수가 있지요, 현실성이 없어서.

○소위원장 조승래 아니,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 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2항은 정부 지원 근거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수어든 더빙이든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장애인들한테 어떤 편익을 주려면 비용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 비용은 사업자도 그리고 정부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국장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관 김정렬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다, 필요하다는 걸 저희가 동의를 하는데, 수석님께서 ‘노력하여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했던 가장 큰 의미는 사실 우리 법 말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보면 방송사업자나 IPTV 사업자에 의무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실무 입장에서 볼 때는 제공해야 한다면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영찬 위원 맞춰서 ‘제공해야 한다’로 가지요, 그러면. 그것을 따로따로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소위원장 조승래 박성중 위원님.

○박성중 위원 제가 이야기한 게 앞에서……

윤영찬 의원이 개정안을 냈는데 수정의견이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바뀐 사유는 단순히 방송법 때문에 그런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예, 방송법에 체계를 맞췄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관 김정렬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박성중 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방송통신발전 기금에서 비용을 부담하라는 그런 건가? 결과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재원에 대해서는 특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성중 위원 특정하지 않지만 어느 재원으로 들어가느냐 이거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지금 방송법상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거기밖에 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게 충분히 적립이 가능하냐, 앞으로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텐데 생각보다는, 모든 데 다 들어가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아닙니다. 지원 규모는 재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박성중 위원 그러면 재원 없으면 안 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정부 지원사업이 재원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없으면 줄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박성중 위원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좀 더 이게 얼마나 소요가 될지 이런 것도 좀 판단해 가지고 제대로 판단해서 충분히 가능하고 앞으로 영속이 가능하냐 하면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못 하다면 할 수 있다라고 또 해 놓고 나중에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허은아 위원 그리고 이게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정필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콘텐츠에 들어가는 건지 아닌지, 사실 그것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항이 정부가 경비에 대해서는 지원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라, 아까 박성중 위원님께서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원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것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아니, 지원할 수 있다인데 여기 수정의견이 하여야 한다로 되니까 문제가 약간 수정…… 원래……

○고민정 위원 그러면 두 개를 맞춰야 된다?

○박성중 위원 의원님 안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것 아니냐, 1차로. 돈이 충분하다면 ‘하여야 한다’로 해도 되지만……

○윤영찬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정부가 지상파나 중편 이런 쪽에는 다 ‘지원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또 IPTV에 대해서는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기는 하잖아요. 제가 낸 안이기는 하지만 전문위원 의견이 오히려……

○박성중 위원 전반적으로 체크해서 가능하다면 ‘하여야 한다’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좋겠지.

○정필모 위원 이것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이에요……

○윤영찬 위원 하도록 할 필요는 없다?

○정필모 위원 의무조항으로 해도 별문제가 없는……

○윤영찬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의무조항으로 가는 게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성중 위원 해 놓고 돈 지원 안 되면 그것 아무 의미 없는 거지.

○소위원장 조승래 아니, 그런데 노력을 해야지요. 정부가 예를 들면 기금운용계획 같은 것 세울 때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그것 관련된 사업 꼭지를 잡아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 측하고 의원실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합의된 것을 가지고서 우선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19항·20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제22항 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먼저 조승래 의원님 안은 의사일정에 빠졌으나 소위 자료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위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및 제22항 방송법 정회용 의원, 도종환 의원안은 법안 간 차이점을 정리한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방송사업자가 외국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방송할 때는 한국어 더빙 등을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청취약계층 등이 외국어로 방송되는 프로그램 시청 시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어 더빙이나 한국어 자막 제공이 의무화되는 경우 방송사업자의 이행 부담 등 재정적 측면에서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해외 주요국의 경우에도 장애인방송 영역에 자국어 더빙을 포함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방통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장애인방송 제도 도입 이후에 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 등의 영역으로 정립된 점을 고려하면 한국어 더빙 등을 추가로 의무화하는 것은 장애인단체 그리고 학계, 전문가, 방송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사업자의 이행 부담 등 재정적인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입니다. 아울러 방송사업자들의 경영 상황, 시청자 요구, 예산 및 조달 방법, 기술적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반대한다 이거지요? 반대하시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예.

○소위원장 조승래 반대 사유가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 법안이 제출되고, 저도 법안을 제출했고 전체위에 상정이 안 돼 가지고 아직 소위 직회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장애인단체…… 물론 방송사는 비용 문제 때문에—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같은 것들이 있으면 할 용의가 있겠지만—당연히 난색을 표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장애인단체나 성우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안을 제출한 것이지요…… 사실상 지금 방송사의 문제지요. 그것도 어떤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의견을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폐쇄자막이나 화면해설·한국수어 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면해설과 한국수어의 의무편성비율 목표가 10%, 7% 정도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또 예산의 문제인데요. 지금 이런 부분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 편이 돼서 만약 가용 예산이 있다면, 물론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이 많아지고 하면 의원님 발의하신 그 입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먼저 장애인에 대해서는 화면해설 그리고 한국수어 비율 확대를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신중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아니, 그런데 장애 유형에 따라서, 청각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자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외화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예.

○소위원장 조승래 왜 시각장애인은 이런 차별을 받아야 될까요? 같은 논리라면, 청각장애인들이 자막으로 제공하는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10% 밖에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도 시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장애인은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외국 영화에 대해서 접근을 제한당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장애 유형에 대한 차별행위이기 때문에 그 장애 유형에 대한 차별행위를 좀 해소하자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된 실제로 지원 근거나 방송사들의 편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사의 의지나 또 재정 여건에 따라서 그 비율이 낮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정책적으로 시각장애인을 배려하고자 하는, 그리고 지금 이 법에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배려하는 관점에서 집어넣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데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결국은 예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면해설이나 한국수어에 비해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더빙에

있어서는. 그래서 제작비용 부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현실이 그렇게 따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화면해설이라든가 한국수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미흡해서 그런 쪽을 더 우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고, 나중에 국회에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이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그런 게 저희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아니, 법적 근거가 있어야 예산이 확보되는 거지 예산 먼저 확보하고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위원 보니까 22년에서 26년 연평균 재정소요액이 55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년 평균이 그렇다는 건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연평균 그렇다는 겁니다.

○고민정 위원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원하기 어렵다…… 예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은 방통위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되는 게 정부기관에서 하셔야 될 말씀이고요.

저는 오히려 여쭙고 싶은 게 도종환 의원님 안에 보면 ‘한국어 자막과 한국어 더빙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라고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자막과 더빙을 보냐 듣냐, 아니면 안 보고 안 듣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고 법안은 돼 있는데 정부안에 보면 더빙과 자막 때문에 시청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선택할 수 있다고 법안에는 돼 있는데 이게 왜 불편을 초래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가 궁금하네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한국어 더빙하고 폐쇄자막, 수어를 함께 제공하게 되면 장애인…… 비장애인에 대한 어떤 시청에 있어서 일부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외국어 음성으로 듣고자 하는 경우 어떤 선택 곤란 그리고 자막 및 수어 표출에 따른 필요 이상의 화면 가림 등으로 인한 시청 곤란이나 화면 접근성 저하의 우려가 있다, 일부 그렇다는 의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고민정 위원 그러니까 자막이나 더빙을 했을 때 선택할 수 없고…… 2개가 동시에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한국어랑 영어가 동시에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불편하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이 부분은 물론 장애인 보호라든가 이런 측면은 있지만 많은 일반 시청자들이 보고 했을 때 그런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얘기한 것뿐입니다. 이 부분이 주된 사유는 아닙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든가 또는 방송사의 어떤 여러 가지……

○고민정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시청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걸 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예산 때문에 그렇다 그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시청자들의 불편도 일부 요소가 있다는 뜻이지 이 부분이 주된 사유는 아닙니다.

○고민정 위원 아니, 그런데 봐 봐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다들 영화 같은 것 볼 때 자막이든 혹은 더빙이든 선택해서 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되게 혼란스럽고 보기가 어렵다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기술적 이해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오디오 채널은 주 음향하고……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방송을 잘 아시니까요. 그런데 주 음향 그리고 화면해설방송, 보조오디오 사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2개로 구성돼 있어서 한국어 더빙을 추가한 세 가지 오디오 트랙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좀 어렵다. 그래서 주 오디오를 한국어 더빙으로 할 경우 결국 일반 시청자들의 불편을 조금 초래할 수도 있다. 이것은 한국방송협회에서도 기술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완하면 또 개선될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민정 위원 자막은요? 자막,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자막 때문에 시청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금 설명을 하셔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자막 지우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시청자 불편은 없는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자막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하여튼 그런 관점으로 좀,

이것 가지고 더 얘기를……

방통위 부위원장님의 의견이 내가 보기에는 엄청 완강한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제가 그 고집을 꺾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왜 도대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사실 TV 시청할 때도 자막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보면 TV 볼륨 엄청 크게 틀어 놓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TV가 작으면 자막도 작기 때문에 잘 보실 수가 없어요, 가까이 있는 것은 돋보기 끼고 보지만, 사실 어르신들한테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각상의 크든 작든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즐길 수 있도록 그 접근권을 좀 보장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관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자꾸 비용의 문제로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비용의 문제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 싶으면 수어든 자막이든 다 마찬가지로 아니겠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위원장님, 이번 이 법안 논의를 계기로 저희 방통위에서도 방송사업자들의 어떤 경영 상황이라든가 예산 조달 방법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입법취지, 근본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이니까 앞으로 이 입법 안건 논의 계기로 해서 좀 전향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자들의 경영 상황들을 검토해서 저희도 재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과기부 방송진흥국장님 계신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관 김정렬 예.

○소위원장 조승래 그 관련해서 과기부 예산 한 10억 정도가, 더빙 지원해 주고 하는 것 포함해서 그런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관 김정렬 예.

○소위원장 조승래 올해,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과기부에도 저런 일종의 시청자들의 편익 제고를 위한 다양한 예산 같은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기부, 방통위 아니면 기금 그리고 방송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점점점 장애인들의, 시각장애인들이든 청각장애인들 간에 이런 장애인들의 시청권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여튼 그렇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의사일정 18항 정리된 걸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기통신사업법 이인영 의원님 안은 집합건물 소유자·관리인이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업자 간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제1호 다음에 추가하는 것보다는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를 규제하는 제5호 다음에 안 제5호의3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5쪽을 보시면 행정입법을 통해 금지대상 및 금지행위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 의견 등을 감안하여 안 제5호의3 후단에 규제대상 건물의 유형과 관리주체의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은 방통위 고시에 위임하고 부칙안 제2조 중 이미 체결된 이용계약에 대해서는 기존 이용계약의 약정기간 동안만 금지행위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집합건물에서의 독점계약에 따른 이용자 선택권 제한 및 이로 인한 사업자 간 공정거래 저해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개정안 내용상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의 세부유형이므로 1의2보다는 5의3이 적절합니다. 규제대상 유형 등 세부내용은 방통위에서 고시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자 선택권 제한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로 금지행위 유형 중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로 규정할

과방위 행정실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특별히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은 의결……

○행정실장 최정배 27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27항 또 있습니까? 이따 같은 제명이 있으니까 이때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변제일 의원안은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 설치·운영자의 불법정보 유통 차단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의무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안 제44조의7제5항 중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를 운영하는 목적이 사업자마다 다양하므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안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를 통한 불법정보 우회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광범위하며 그 목적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른 수범대상으로 한정하고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기술적 조치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위임 사항에 사업자 종류를 추가하고 기술적 조치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불법정보 식별, 접속 제한으로 구체화, 정보 게재자에게 유통금지 요청 및 관리실태 기록 등도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어쨌든 수정안은 기술적 차단 조치에 대한 구체화 그것을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법무부나 방심위의 의견도 해소가 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예, 다 가능한 겁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동일 제명 법안이 있으니까 이따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문 의원님 안은 대리점의 미승낙 판매점과의 거래 금지를 통해 사전승낙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 제8조 1항 중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이라는 부분은 현행 판매점의 정의 규정이 대리점과의 협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 단통법상의 판매점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자’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을 보시면 안 제8조제3항 단서 중 ‘이통사와 이용자 간 계약체결을 처리하는 경우’라는 표현은 온라인을 통해 실제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내방 유도 게시글에도 승낙서 게시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제안·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7쪽을 보시면 대리점·판매점 대상 시정조치 시 이동통신사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이통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정조치 대상 유통점 중에는 영세 유통점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통사를 통해 추가 제재가 이루어지는 경우 가혹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9쪽을 보시면 안 제22조제1항의 경우 미사전승낙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 5000만 원이 다른 위반행위 부과 수준 1000만 원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하

여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거나 사전승낙이 철회되었음에도 영업한 자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자와 거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000만 원 이하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판매점 사전승낙제도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행정실의 검토의견에 모두 동의하고 이번 개정을 통해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통사의 유통점 관리책임을 강화하여 단말기 유통성 건전화 및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부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이 법안 내신 이정문 의원실에 수정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 보셨나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특별한 이견이 없으셨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이견이 없으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저희가 뭐 의원실에 개별적으로 사전에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어쨌든 이게 개정안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니까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예, 부처 의견을 반영해서, 그리고 내일 또 전체회의에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소위원장 조승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통신비밀보호법 허은아 의원님 안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관련 시정명령 등 도입과 감청설비 인가대장 관련 형량 완화 내용으로 지난 2월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정필모 위원님께서 소규모 사업자들의 관련 서류 데이터베이스화 실태가 어떤지 파악해 보고 만약 제대로 서류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지 않는다면 대안 없이 제재 수준만 너무 낮추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닐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20년도 5월에 과기부가 당시 통신사실확인자료 통계를 발표하면서 오류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런 통계 오류가 있었던 게 업체들이 제대로 보고를 안 하고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단순 오류였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셨고요.

조승래 위원장님께서서는 핵심은 실효성 높고 통신비밀이 잘 보호되는 정도 수준의 양형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실제 실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소위 자료에 대한 설명은 지난 소위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현행 형벌로 규정돼 있는 단순 자료 보고 불이행이라든지 비치 위반에 대해서는 선행정처분 후에 형사처벌하는 그런 개정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지난번 소위 논의 때 지적했던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해소가 됐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으니까요.

정필모 위원님, 그때 주신 의견이 어떻게, 해소가 되셨나요?

○정필모 위원 제재 수준 낮추는 거는 뭐, 이게 자체적으로 오류를 좀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전제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오류가 통신 3사 제외하고도 67.4%가 위법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뭔가 자체적인 어떤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과기부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고 또 저희들이 신중하게 철저히 확인해서 보고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87개사를 현장 점검했고 일부 사업자들이 자료를 보고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하고 이런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서 형사고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지킴이 않은 사업자들이 신생 알뜰폰 사업자들이 대부분이고 이 제도의 어떤 사실관계들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들이 있는 것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현재 자료의 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대체적으로 큰 사업자들은 DB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작은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아직도 조금 USB나 보안 캐비닛을 활용하고 있는 점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비중은 데이터로 보면 한 0.9% 수준인데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DB화해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필모 위원 그러니까 이 관련된 관리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중소기업자들 있잖아요, 영세한. 행정적인 지도를 해 가지고 이런 오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아니, 그런데 저도 그때 관련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한 것 같은데, 자료를 주셨습니까?

○정필모 위원 자료를 안 주신 것 같은데요, 저한테도.

○소위원장 조승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정필모 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도대체 지금 실태가 어떤지를 좀 정리 자료를 달라고 그랬고 주신다고 했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조금 전에 제가 구두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자료 관리 실태를 확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필모 위원 제출하세요.

○소위원장 조승래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있든 테니까 그거를 회의 마치고 보내 주시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바로 보고드릴……

○소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그렇게 보내 주신

걸…… 어쨌든 소위에서 의결하고 자료가 이상하다 싶으면 전체회의에서 보류해 버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의사일정 제26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27항,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전기통신사업법 고민정 의원님 안은 중고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을 통해 정상거래 이후 부당한 분실·도난 신고로 사용이 차단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러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신단말장치 중고거래 시 판매자가 분실보험금 수령 등 목적으로 단말장치를 판매한 후 분실·도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정당한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아니므로 현행 법령에서는 분실·도난 해지 권한이 없어 통신단말장치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중고 단말기의 안정적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되는 사실확인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이것은 뭐 토론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5항에서 14항까지는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15항, 23항, 27항 이 3건의 법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28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노용호 의원안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시설,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정부 출연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나 안 제28조 1항이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입법례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능한 한 지원 수단을 하나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므로 ‘출연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사업 근거들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수정의견은 이게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보조 부분은 삭제해도 크게 문제없을 것 같아서 수정의견에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필모 의원님 안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지침 준수명령과 보호조치 명령을 규정하고 명령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안 제11조제1항제3호는 침해사고 발생 시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후조치 의무를 강화함에 있어서는 11조보다는 제14조에 조치명령의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옮겨 규정하고, 국가정보원 및 국방부도 각각 공공·국방 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안 제2항 중에 ‘국가정보원장등’ 또한 보호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국가적으로 중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을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개정안 중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사전조치가 아니고 사후조치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의견에도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명령기관으로서 공공과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장등’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에도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모 위원님.

○정필모 위원 저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런데 국가정보원장이 그 명령의 주체가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지금 주요기반시설의 관리를 민간 부분은 과기정통부장관이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국정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법체계상.

○소위원장 조승래 아니, 그렇기는 한데요 국정원이 무슨 지침을 주거나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행정행위를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이 법에 의해서 기반시설의 보호대책 또 보호계획 수립 그다음에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권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현행법 9조의2에 국방부장관하고 국정원장이 그렇게 주체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현행법에도.

○소위원장 조승래 아니,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글쎄요, 국정원장이 이런 명령행위를 할 수 있다?

나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차라리 그것은 보안성 검토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게 만들어지면 그걸 행안부장관이든 아니면 과기부장관이든 그렇게 해서 행정적인 절차나 조치들은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지 국정원장이 무슨 명령을 한다? 그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하여튼 나중에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김영식 의원안은 백도어 설치 및 전달·유포 행위 금지와 의무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행 규정과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어 안 제48조제4항 중 ‘부정한 목적으로’를 ‘정당한 사유 없이’로, 개정안의 ‘무단접근장치등’은 백도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행 제2조제1항제7호나목과 의미가 동일하므로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정보시스템에 백도어를 설치해서 침해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요.

수정의견처럼 현재 망법상 규정되어 있는 백도어 규정을 여기에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러니까 ‘백도어’라는 표현이 아니라 ‘무단접근장치’……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그게 아니고 정의 규정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와서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홍석준 위원 차관님, 이름을 뭘로 했든 백도어 같은 경우 지금 우리 국내 제품보다도 중국

관련된, 그게 통신장비가 됐든 로봇이 됐든 굉장히 지금 심각한데 사실은 제가 몇 차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게 과기부가 주관이 돼야 될지 국정원이 주관이 돼야 될지 주관 부처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외국, 특히 중국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이 법이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기기 자체에 대한 인증이 아니고 이 부분은 백도어를 설치해서 또는 그것을 통해서 데이터나 자료를 전달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처벌이고 지금 홍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기기를 수입하거나 활용할 때 특정한 장치들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걸러 내도록 하는 부분들은 이 조항으로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별도의 입법 등을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석준 위원 아니, 그런데 이 법에 무단접근장치를 설치하거나 전달·유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그런데 기기를 사전에 저희가 수입할 때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살펴서 정부기관이 인증하는 문제는 사실은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법이 있어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고 이것은 해당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어서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리고 ‘부정한 목적으로’와 ‘정당한 사유 없이’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윤두현 위원 그게 재미로 설치해서도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는 꼭 필요해서, 예를 들면 도둑을 잡거나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은, 방첩 이런 것은 되지만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고, 부당한 것은 내가 불법적인 이익을 얻거나 이럴 목적으로 할 때니까 그 중간 지대가 사라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재미로 하는 거라든지 그런 건 안 되지요.

나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이것은 충분히 타당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소위원장 조승래 그러니까 재미로 한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윤두현 위원 안 되지요.

○소위원장 조승래 그것도 안 된다?

○윤두현 위원 정당한 사유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조승래 정당한 사유?

○윤두현 위원 예.

○소위원장 조승래 정당한 사유가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윤두현 위원 방첩, 간첩을 막거나 범죄를 막는 목적 뭐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조승래 그것도 어떤 특정한 개인 시설물이나 망에 뭘 하려면 영장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 갖다 할 수가 없잖아요?

○윤두현 위원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라는 게 과기정통부나 해당 부처에서 임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나 이런 데서 얻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종국적으로는 법원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정당한 사유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정당한 법적인 절차에 따른 감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한 경우는 당연히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고요.

업계의 현실적인 개발 환경을 봤을 때, 시스템 개발할 때 아마 개발자들이 편의상 백도어 같은 것을 설치해 놓고 작업을 하다가 작업이 완료되면 그 백도어를 없애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 작업시스템이 완료되기 전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아니, 그러니까 그건 부정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개발자의 자기 개발 목적대로 하는 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여……

○윤두현 위원 그건 정당한 사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처럼 의견이 엇갈릴 때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정당한 사유라는 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경우로 아주 엄격하게 제한해야 되지, 예를 들어 개발할 때 백도어를 설치해 놓고 깜빡하고 그냥 냅둔 말이에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면책을 해 주면…… 그걸 어떻게 구분하시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조문이 필요한 거고요.

완전히 납품하기 전에 작업하는 과정은 일반 공중에게 어떤 피해를 주거나 위해를 주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건 일정 정도는 용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이제 앞으로 재미로도 못 한다 이거지요?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동일 제명 있습니까? 그러면 이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박성중 의원님 안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추진 방식을 유형화하여 명시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업자 간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의 공동소유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안 제40조제3항은 안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세 유형 모두의 공동소유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2항제1호의 수익형 및 안 제2호의 임대형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에만 용역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어 공동소유 원칙이 적용되고 안 제3호의 구매형을 포함하는 그 밖의 사업은 공동소유 원칙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6쪽을 보시면 안 제40조의2는 임대형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사업별 한도액, 예비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4항은 국회 제출 시 민간투자법을 준용하도록 하였는데 이 중 제7조의2제2항의 예비한도액 금액은 개정안에서 준용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 이를 명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제도를 정비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다년간 국비가 소요되는 임대형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장래의 국비 지출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을 하고 또 그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문 정리를 하는 수정의견에도 과기정통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자료 보니까 국회법 그리고 국가재정법 개정, 이것 지금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서 의결이 되면’ 이걸 전제로 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현재 국가재정법하고 국회법이 각각 운영위하고 기재위에 상정되어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세 가지 법이 같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과방위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아마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같이 속도를 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이 법이 통과되면 기대되는 효과가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정부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해 오던 방식에서 정부도 민간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민간투자하는 부분들을, 구매하거나 개발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채택하려고 하는데 그 경우에, 지금 현재 한 2건 정도가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에 대한 비용을 민간사업자들에게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에 대한 안정적인 장치들이 법에 좀 마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우리 법 말고 민투에 있는 민간 SOC에 대한 그런 조항들을 같이 균등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이것이 통과된다면 정부기관에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개발사업들이 안정적으로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말씀하세요.

○허은아 위원 규제가 아니라 활성화로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이게 민간사업자들이 먼저 선투자하고 나서 그 재원을 다시 수익형이라든지 이렇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인데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법에 의해서 확인하고 제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러니까 그동안 민간투자라는 것이 주로 기반시설이나 건물·도로·학교,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도로나 건물 뭐 이런 겁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렇지요? 그런 것을 주로 했는데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열자 이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민간투자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들은 만들어졌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도로나 학교건물 짓는 것과 같이 나머지 여타 제도들도 같이 들어왔어야 되는 부분들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발견이 돼서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소프트웨어 민간투자 발주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민간사업자들의 사업성도 판단해야 되고요. 그래서 규모를 일정 정도, 저희가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소위원장 조승래 그렇지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민투로 하는 것이지 규모가 작으면 민투로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발주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우려가 되냐면 소프트웨어 쪽의 투자가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좀 위축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이 사업들은 말씀 주신 대로 아마 대체적으로 규모가 좀 큰 부분들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그런 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 부분에 대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의 이견이나 그런 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이견이 없어요? 의견은 들어보셨고요? 내가 보기에 안 들어 본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담당 과장한테 다시 확인했는데요,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적극 지지한다는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괜히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게 있으면 작은 사업들을 번들로 묶어 가지고 키워서 해요.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성중 위원 제가 발의한 사람이니까……

○소위원장 조승래 발의자는 가만히 있는 게 좋을 텐데.

(웃음소리)

어쨌든 제가 조금 노파심에서 몇 가지 짚어 본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서는 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국회법이나 국가재정법 개정에도 대해서도 같이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건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전파법 김영식 의원안은 개별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고 있는 철도차량·철도용품·계량기를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 기자재로 신설하고, 시험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시험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제조자가 국내에 대리인을 허위로 지정한 경우 적합성평가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으로 안 제5호 중 인용 조문을 ‘제58조의1제1항’으로 명확화하였습니다.

다음, 7쪽을 보시면 안 제58조의5제1항제3호는 시험기관의 지정요건이라기보다는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어 삭제하여 현행을 유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8쪽을 보시면 10쪽까지의 안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 설정 및 재지정 제도 도입 내용은 현행법 제58조의6에 따른 정기검사에서 지정요건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부적합한 경우 제58조의7에 따라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가 가능하므로 삭제하여 현행을 유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을 보시면 경영상 이유 등 자발적으로 업무를 폐지한 경우에도 다시 지정시험기관으

로 지정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어 안 제8항제3호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을 보시면 안 제58조의7제2항제5호는 현행 제1호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밖에 용어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적합성평가 제도와 관련해서 다른 법률에 중복돼서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내용들하고 시험기관이라든지 하는 데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 또 지정제도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정부는 동의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모 위원님.

○정필모 위원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전파법상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현재는 안합니다. 그 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정필모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중복 규제 예방을 위해서 만약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장 최우혁 위원님, 타 법에서 유사한 시험을 한 경우, 동일한 시험을 한 경우 그걸 인정하는 그 과정……

○정필모 위원 인정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장 최우혁 예, 인정을 해 주는 그 과정입니다.

○정필모 위원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지금 타 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게 뭐뭐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현재 소방시설과 관련되는 소방기기라든지 위원님 말씀 주신 의료기기, 그다음에 철도안전법에 따라서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 이런 것들은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면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지금 어쨌든 이 전파법에서 다루고 있는 적합성평가보다 훨씬 더, 그 정도 수준

혹은 강화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래요? 적합성평가에 대해서 아주 종합적인 평가를 할 때 이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다들 하는가 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장 최우혁 아닙니다. 시험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전기용품을 할 때 전자파 부분을 같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TV 같은 것을 할 때 전기안전도 보지만 전자파에 대한 부분을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자파를 본 것으로 인정하는 이런 체계입니다, 동일한 시험방식으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소위원장 조승래 아니, 그러면 최근에 애플 있잖아요, 애플.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그것은 저희들 기준과 시험방식에 따라서는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돼서 시장에 나올 수 있었고요.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저희하고 비슷한 시험 결과를 갖고 왔는데 이상하게 프랑스에서만 그 특정한 단말 종류에 대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저희들도 대사관과 프랑스 측에 관련되는 자료를 한번 받아서 검증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사안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혹시 기준이 저희하고 다른 건지,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측정하는 방식에 어떤 다른 게 있는지 하는 것도 저희가 한번 확인 중에 있는데 아직 확인이 조금 덜돼 있는 상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장 최우혁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게, 예를 들어서 휴대폰은 과기정통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V는 산업부가 하고, 그런데 거기서 전자파 이슈가 있을 때 저희 기준을 하는 거고, 휴대폰은 전기안전에 대한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파와 SAR에 대한, 인체안전에 대한 부분만 보기 때문에 과기정통부만 보게 되고요.

이번에 프랑스에서는 총 141종을 수거해서 갤럭시나 애플이나 이런 것을 다 했는데 거기서 구형 단말인 아이폰12만 지금 유독 그 부분에, SAR 측정기준에 데이터가 올라가 있어서 저희가 프랑스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다시 한번 테스트는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다른 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

는 적합성평가를 준용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장 최우혁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런데 어쨌든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파법에 따른 기준들에 대해서 과기정통부는 꼼꼼히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리스트를 한번 정리해서 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는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리스트를 좀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말만 하지 말고 꼭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소위원장 조승래 전파법은 그 뒤에 또 법안이 있으니까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4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전파법 김영식 의원안은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일부 기자재를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스스로 시험하거나 시험 가능한 기관의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공개하도록 하는 자기적합확인을 도입하여 사전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안 제58조의2제4항 중 ‘시험 가능한 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 가능한 기관’으로 수정하고, ‘확인’ 문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관리’로 수정하며, 자기적합확인 및 적합등록 중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의무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일부 자구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위해도가 좀 낮다고 판단되는 기기에 대해서 해외 주요국

들이 스스로 적합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도 그런 제도를 국내에 도입해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신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용어가 어렵네요. 그렇지요? 용어가 어려운데, 이것은 아까 앞서 적합성평가랑 똑같은 얘기인데……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일부 기자재’ 이게 뭐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를 들면 LED등 같은 경우에 사실은 측정해 보면 거의 주변 환경에 영향도가 떨어지는데 또 LED등 같은 경우에는 다품종이어서 만들 때마다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비 부담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측정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거고요.

USB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다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법률을 개정하면 그 법률 개정…… 이게 뭐 뒤에 리스트 같은 게 붙어 있습니까? 이것 이상하게…… 아니, 여기 뒤에 있나, 17페이지에 있나? 이겁니까?

○고민정 위원 앞에는 현행이고 뒤가 개정.

○소위원장 조승래 여기 있네요.

어쨌든 이것 88건인 건가요? 아니네. 더 되는 거네, 지금.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세 번째……

○소위원장 조승래 세 번째.

○박성중 위원 조명기기, USB·전전지.

○소위원장 조승래 아니, 우리가 법을 개정하면 도대체 수혜가 되는 게 뭔지는 알고 법을 통과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앞으로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정부에서는 이런 걸 좀 정리할 때 이 법이 개정되면 도대체 수혜가 되는 업종 아니면 기자재, 기기 이게 어떤 거다 그런 것을 참고자료로 좀 넣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예, 18페이지의 표에 보면 세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정리를 계속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논의해서 결론 낼 때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 전파법 또 있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예.

○소위원장 조승래 의사일정 34항,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전파법 홍석준 의원님 안은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기관은 그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손실을 보상한 기관은 드론 및 폭발물 등의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안 제29조의2제2항 중 손실보상을 규정한 다른 입법사례에서는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시가 아닌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불법드론 같은 공공안전에 위험 요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런 손실의 문제라든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담당자들이 잘 이용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기준을 고시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수석전문위원 보고에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전파차단장치, 예를 들면 대통령 행사 같은 것 할 때 전파차단했다가 만약에 무슨 디바 이스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실에서 다 물어 줘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장 최우혁 위원장님, 이게 핵심은 원자력시설 같은 데 아니면

공항 같은 데 드론이 뜨게 되면 드론을 추락시키는 장비인데요. 지금 전파법에서는 형사처벌의 면책권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뜨리고 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시설에 대한 위해가 생기게 되면 민사적인 책임이 쏜 사람에게 대해서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해당 기관이 먼저 보상을 하고 구상권을 드론을 띄운 사람한테 묻겠다는 그 내용이 들어 있는 겁니다. 대통령 이동 시에 하는 장비는 전파차단장치이고 지금 이것은 주력이 드론에 관련된 게 핵심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러니까 채명…… 아니, 그러면 이게 명확성이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법안인데 여기에 보면 전파차단장치라는 포괄적인 것으로 두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두현 위원 아니, 법을 만드신 분이야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판사도 그 개념을 가지고 있냐 이거지요. 안 그러면 포괄적으로 보면 방금 그런 일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지요.

○소위원장 조승래 뭐 신문기사 그렇게 나는 거지. ‘앞으로 대통령실, 전파차단하다 피해 입히면 다 물어 줘야 돼’ 이렇게 나가도 되냐 이거예요, 한 마디로 얘기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위원장님, 현행 전파법에 보면 대통령 경호에 관해서 하는 안전활동 등은 이런 것에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것은 그렇다 쳐요. 그러면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열거되지 않은 것들은 다 해당된다고 하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드론으로 채명하거나 안티드론 하기 위해서 발생했던 것에 대한 2차적 피해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진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소위원장 조승래 그것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런데 그 법에 명확성이 없잖아요, 이것은 엄청나게 일반적인 내용인데.

이것은 나중에 검토를 좀 해 보세요. 법이라는 게 명확성이 있어야 돼요. 너무 포괄적인 거지 않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필모 위원 우리가 그런 게 있거든요. 대북, 그러니까 북한에서 넘어오는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차단 전파 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필모 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이것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위해 전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못하면 이 법에 의해서 피해를 보상해 줘야 될 수도 있어요,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위원장님, 현행 전파법에 따라서는 전파차단장치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대통령 경호, 그다음에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군사활동 또 테러방지, 공항·원자력시설 이것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 전파차단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제한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만약에 전파차단장치를 쏘서 드론이 민가에 떨어졌을 때 형사책임은 면책이 되는데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소위원장 조승래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지요. 이것은 안티드론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허용되어 있는데 대통령 경호 필요에 의해 가지고 전파차단하고, 대통령 행사하는데 막 드론이 떠다녀 봐요. 그러면 당연히 떨어뜨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소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떨어뜨려서 재산상의 피해를 끼쳤으면 대통령실에서 보상을 해 주고 그 드론 날린 사람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겠지요. 마찬가지로이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지금 조문이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 여쭙았는데 그게 또 아니라고 해서 제가 그러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아닙니다. 그게 맞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맞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맞습니다.

○고민정 위원 대통령실, 원자력 뭐 다 들어가 있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5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필모 위원 예외 조항에 제가 얘기한 것도 들어가 있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정필모 위원 그러니까 거기 국가안보와 관련된 게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이게 통합방위법, 군사기지 보호법 등에 따른 국가안전 보장 목적의 군사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저것은 안 들어가 있는 거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군사활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것은 나중에 한번 법을 검토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소위원장 조승래 하여튼 참 우리가 법을 통과 시키면서 도대체 이 법의 대상이 뭐가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좀 하자라는 취지니까요……

○고민정 위원 그런데 아까는 원자력시설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대통령실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셨지만 내용을 살펴보니 대통령실이든 원자력시설이든 다 적용이 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행 전파법 29조 제3항에 따라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여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안전활동, 그다음에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 두 가지 다 전파차단장치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32항, 33항, 34항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5항,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박완주 의원안은 5쪽까지에 걸쳐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허가 및 특례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신기술·서비스의 사업개시가 지나치게 지연되어 규제정비 필요성의 판단 자체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규제 샌드박스의 내실 있는 사업 관리 등을 위해서 지나치게 장기간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23년 5월 기준으로 2년 이상 경과했는데 사업을 하지 않는 과제가 12개 있고요. 전체 173개 중에서 약 6.7%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토론……

이것은 제가 보니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별정우체국법 박형수 의원안은 과기부령에 규정되어 있던 별정우체국 직원의 결격사유를 별정우체국법에 상향 규정하여 결격사유 조회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4쪽을 보시면 역시 부령에 규정되어 있던 당연퇴직 규정도 타 입법례에 맞추어 법률에 상향 규정할 필요가 있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부령에 있는 것들 중에서 중요 내용들을 법률에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별정우체국법은, 아까 그것은 그냥 보류, 계속 논의하기로 한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예, 이것만 수정 의결하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17항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36항은 수정한 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7항,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우편법 이정문 의원님 안은 반환이 필요 없는 고지서, 홍보성 우편물 등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대량 발송 우편물은 배달 불가 시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송인이 반환 필요 의사를 우편물에 기재한 경우에 반환하는 것을 예외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5쪽을 보시면 부칙 중 ‘공포한 날부터’를 일반적 입법례에 따라 ‘공포 후’로 자구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현재 우편물의 반환 업무로 인한 비용이 1년에 한 300억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우정사업 현실에 맞추어서 효율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런 의견에 저희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 진짜, 우편물 반환까지 다 법에 정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이용자들하고 우체국들하고 일종의 이용계약 같은 것들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법에 꼭 정해야 되나?

하여튼 의사일정 제37항 우편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및 제39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우상호 의원안과 박성중 의원님 안은 영리성 정보의 야간 전송에 대한 수신동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게 수신동의 처리 결과의 통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처벌 강화 등의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안 제72조(벌칙)에서 인용하는 규정의 조문번호가 빠른 순서대로 배치하므로 제42조의2를 인용하는 처벌규정은 안 제1항 6호가 아닌 안 제1호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을 보시면 제50조 등 다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와 관련된 의무규정 위반 시 과태료 상한액이 300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제2항제9의3의 불법스팸 대응 관련 필요한 조치 실시에 관한 제50조의4제4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000만 원이 아닌 3000만 원으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스팸이 일상생활의 불편을 넘어 불법대출, 도박 등 지능형 범죄로 이어지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스팸 전송자의 법적 의무를 해태하는 등 통신사업자의 처벌수위 상향은 불법스팸 전송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말씀하십시오. 다 하셨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예.

○소위원장 조승래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모 위원 과태료만 그 두 안을 통일해 가지고 수정 의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예, 저희가 3000만 원으

로 수정의견을 냈고, 동의하시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의사일정 제40항 박성중 의원이 내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걸 논의하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4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박성중 의원님 안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및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필요성에 따라 연계정보의 정의 및 연계정보 생성·처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전자정부서비스 처리를 위한 연계정보 생성·처리가 허용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행정안전부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23조의5제1항제2호를 신설하고, 다음 5쪽을 보시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연계정보 생성·처리가 허용됨을 명시하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3호를 신설하며, 다음 6쪽을 보시면 안 제4호에서 연계정보 일괄변환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된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개보위의 의견을 반영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을 보시면 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으로 안 제23조의6 중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이 본 조의 조치 의무와 별개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을 보시면 벌칙 및 과태료로 연계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사 처벌조항과 처벌수위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으므로 안 제71조제1항제9호로 연계정보의 생성·처리가 허용되지 아니한 자가 연계정보를 생성·처리한 경우, 안 제10호로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다음 21쪽을 보시면 안 제76조제1항제2의5 및 제2의6으로 연계정보 관련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수정의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등을 위해서는 주민번호를 연계번호(CI)로 일괄 변환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연계번호의 일괄 변환이 명확한 법적 의무 없이 규제특례를 통해 임시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연계정보의 일괄 변환 근거 및 안전성 확보 등의 조치를 규정하는 등 개정안의 내용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 수정의견과 관련해서 저희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리고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통해서 수정의견에 전부 합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정필모 위원** 하나 여쭙볼게요.

○**소위원장 조승래** 정필모 위원님.

○**정필모 위원** 이 연계번호 해서 암호화할 때 다시 알아볼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했을 때 다시 되돌려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볼 수 있게끔은 못 만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비가역적으로 만드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정필모 위원** 알겠습니다.

○**허은아 위원** 그러면 그 정보 안에 그분에 대한 정보가 다 있는 건가요?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약간 암호……

○**소위원장 조승래** 마이크를 넣고 말씀하세요, 속기하시는 분들이 어려우니까.

○**허은아 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 이게 자세한 설명이…… 그러니까 안심번호 비슷한 겁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를 제가 설명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저희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아 위원** 예.

○**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박경주**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박경주입니다.

이 건은 안심번호랑은 별개로 저희가 주민번호를 인터넷에서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연계정보라는 걸로, 그러니까 암호화를 하는데……

○**허은아 위원** 암호번호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박경주** 예, 암호번호인데 난수처럼 돼서 저희는 그게 어떤 숫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한 13자리 정도의 알파벳과 숫자로 규정된 번호입니다. 그걸 주민번호와 매칭되게 생성을 하고요. 일반인들은 볼 수 없고 사업자들한테만 주민번호 대신 그 번호로 개인 매칭을 할 수 있도록 주는 정보입니다.

○**허은아 위원** 그러면 그 정보가 그 사업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업자에게도 똑같은 암호번호로 나가나요?

○**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박경주** 예, 주민번호 하나당 암호번호가 하나씩 매칭되고요. 그런데 이것은 한 번 사용하면 다시 없어지고 또 보유할 수 없고, 이것을 생성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만 받아서 사용하고 삭제하고 하는 것입니다.

○**정필모 위원** 다시 해야 될 같아요.

○**소위원장 조승래** 예, 그러시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허은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지금 이게 규제 샌드박스의 임시허가로 있다가…… 법률 정비가 좀 늦어지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그 부분이 좀 빨리……

○**소위원장 조승래** 그것도 전임 방통위원장의 책임인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빨리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지금 이게 임시허가 기간이 끝났습니까?

○**허은아 위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위원장 조승래** 마이크 쓰셔서 말씀하세요, 잘 안 들릴 테니까.

○**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박경주** 최

초 임시허가 기간은 카카오페이가 19년 3월에 임시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2023년 2월에 임시허가는 만료됐지만 ICT융합법에서 하위규정인 시행령이나 고시를 개정 중인 때는 임시허가가 유지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방통위 고시를 지금 개정 중인 상황이라서 법적으로는 허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 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안에는 임시허가가 유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박경주** 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 또는 고시 개정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 기관한테 시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지금 2년 동안 규제 샌드박스로부터 허가를 받아 놓고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하는 것으로 아까 우리가 의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왜 임시허가 법령을 정비해야 될 기관은 마냥 늘어져도 상관없는 것이냐, 그 기관한테 무슨 과태료 물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저도 지금 방통위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법안도 그렇고 어떤 정책도 그렇고 좀 미뤄진 것들 또 시급하게 빨리 해야 될 것들을 지금 찾아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방통위 소관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사안들 중에서도 혹시 지연되거나 늦어지고 있는 것들 점검을 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도 그냥 통과를 안 시키려고 하다가 또 특별히 박성중 간사님께서 낸 건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1항부터 4항까지는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제16항, 제24항, 제30항, 제38항, 제39항, 제40항에 대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

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법안은 다…… 우리가 좀 정리할 게 하나 있는데, 방통위는 다 됐으니까 이제 가시고요. 과기부2차관님 잠깐 들어오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가셔도 되는데 제가 붙잡아서 죄송한데요. AI 법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들어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AI법이 우리 법안소위 통과된 지가 6개월이 넘었지요? 그렇지요? 6개월이 넘었고, 법안 통과 이후에 여러 가지 AI법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좀 있어서, 그게 초고도 AI라든지 등등 이런 AI 환경도 많이 급격히 바뀌었고 또 그래서 글로벌 규제 동향도 많이 바뀌고 해서 그 문제와 관련한 좀 보완을 할 테니 정부에서 의견을 빨리 정리해서 갖고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제가 바로 그때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갖고 오지 않은 이유는 뭐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저희들은 그 논의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하고 위원장님 말씀 주셔서 실무적으로는 계속 아마 저희들 의견과 위원님들 말씀을 좀 조율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어느 정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도가 좀 높아진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알고 계신 것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런 상태에서 또 무슨 야당이 AI법도 발목 잡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AI법에 대해서 정 그러면 내일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좀 할 텐데요, 그러면 번안해서 다시 소위로 가지고 와서 다시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해서 올려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시간이 6개월, 한 7개월 정도 지났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박성중 간사님하고 또 상의를 하겠습니까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전체회의에서 빨리빨리 의견들을 취합해서 수정을 하든지 해서 처리하자는 게 제 일관된 주장인

데 6개월이 넘도록 계류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고, 하나는 또 법안 의결을 그동안 한 녀 달이지요, 녀 달 동안 법안 의결을 못 한 이유도 있고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내용 정리가 좀 덜돼서 안 된 측면도 있는 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빨리빨리 움직여서 정리를 합시다.

○정필모 위원 다 아시겠지만 그게 소위 통과할 시점이 사실은 그 당시에 생성형 AI라고 하는 챗GPT나 바드(Bard)가 나오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상당히 환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달라졌고 또 EU에서 법안이 통과된 거예요, 그 이후에. 그래서 이것은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변해 가지고, 그 법안을 제가 사실은 최초로 발의했던 게 벌써 한 2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런데 환경이 급격하게 올해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특히 고위험 AI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이것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조승래 예, 말씀하십시오.

○박성중 위원 차관님, 최근에 오픈 AI, 초거대 AI 관련해서 전반적인 종합적인 검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박성중 위원 그것을 융합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AI 관련 법을 같이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법 자체가 일곱 분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것을 어떤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이라고 하는 것을 균형되게 고려해서 소위 논의를 거쳐서 만든 안이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초고도 AI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인공지능의 어떤 활용에 있어서 신뢰 기반이라고 하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 그동안 여러 지적이 됐던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 같은 조문들은 조금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고민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리고요.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든지 이런 기관이 담당해야 될 부분들과 과기정통부가 담당해야 될 부분들 같은 역할 분담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빨리 상의드리도록 하고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알겠습니다.

법이 왜 빨리 통과가 안 되냐라고 제가 AI 관련된 기업으로부터 독촉을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정부만 서두르는 거예요, 정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우리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빡자고 한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과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위원회안의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님들과 국회 직원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고민정	박성중	박찬대	윤두현
윤영찬	정필모	조승래	허은아
홍석준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전문위원	이정은
입법심의관	서덕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	송상훈		
정보보호정책관	정창림		
통신정책관	김경만		
방송진흥정책관	김정렬		
전파정책국장	최우혁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	박인환		
우편사업단장	김홍재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상인		